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09

발의연월일: 2021. 04. 12.

발 의 자:권명호·정희용·박대수

정진석 · 강민국 · 이철규

임이자 · 윤창현 · 김형동

정운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광업,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 므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 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의3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	제75조의3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
등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	등에 대한 감면) ①
호의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위	
기지역"이라 한다)에서 제58조	
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	
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	
지정된 기간 내에 「중소기업	
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	
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	
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	
에 따라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4년 12월 31일</u>
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	
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	
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	
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	
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	
분의 50(100분의 50 범위에서	
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	
그 율)을 경감하고, <u>2021년 12</u>	<u>2024년 12</u>
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	월 31일
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	
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	
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	

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(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)을 경감한다.

- 1. ~ 3. (생 략)
- ②・③ (생 략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③ (현행과 같음)